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생명안전기본법시행령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권리 교육·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및 안전영향 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독립적 사고조사 및 피해자 추모·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1) 안전사고의 범위에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 산업재해·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로서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사고 및 사람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포함하도록 함.
- 2) 피해자의 범위에 사망·실종 및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다만,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 사고를 직접 목격하

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구조·수습·지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피해자의 권리 교육·훈련 대상 등(안 제4조)

안전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종사자, 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 및 수사·재판업무 종사자 등을 교육·훈련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 내용 및 실시기관 등을 정함.

다. 기업등의 범위(안 제5조)

법 제7조에 따른 책무를 부담하는 기업등의 범위에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되 소상공인은 제외하도록 함.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사무기구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마. 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1)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및 범위와 등록·공개·적합성 평가 절차를 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등록·조정·보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

전기준심의회를 두도록 함.

- 2) 지역별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고려하여 안전지수를 개발·공표하고, 지역의 안전수준 및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안전영향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평가항목·시기 등을 정하고 평가결과의 통보, 이행계획 제출 및 실태점검 등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함.

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에 대한 피해자의 안전사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및 정보 제공의 예외 사유 등을 정함.

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 1) 독립적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의 범위와 정책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점검 절차를 정함.
- 2)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의 직무 및 제척·기피·회피, 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3)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안전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예비조사,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조사보고서 작성·공개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자. 추모사업·공동체 회복 사업(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모사업 추진 방법과 재정지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사고의 범위) 「생명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
2.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로서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사고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제3조(피해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안전사

고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3.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현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4. 안전사고의 구조 · 수습 · 지원 활동으로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하는 사람

제4조(피해자의 권리 교육·훈련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 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 의료 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수사 및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보호 ·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
- ② 교육 · 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2.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지원체계 현황
3. 그 밖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보호 ·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2.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제5조(기업등의 범위)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제2장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생명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 생명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같은 조 제5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이나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생명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9조 제6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생명안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생명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안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기구 및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안전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⑥ 생명안전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명안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생명안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및 그 밖에 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6조부터 제10조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명안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작성지침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생명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생명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포함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생명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생명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생명안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명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3장 안전관련기준의 설정 등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및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련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련기준의 등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련기준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련기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관리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관련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안전관련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관련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련기준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련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안전관련기준의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표한 날 또는 직전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제6항에 따른 분야별 평가주기가 경과한 안전관련기준의 적합성 및 실효성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공표 또는 마지막 적합성 평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안전관련기준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기준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안전관련기준의 정비 필요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심층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적합성 평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련기준의 적합성 평가 대상 선정, 심층진단 등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4항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적합성 평가의 분야별 평가주기, 방법·절차,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안전기준심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련기준의 평가 및 등록, 신설, 조정,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관련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련기준의 신설·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2.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지수의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취약성 분석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별 안전지수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취약성 분석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구조·구급활동 정보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발·조사,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 방법,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의 실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4항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하는 대상인 법령, 계획 및 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2.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계획 및 사업은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를 거쳐 영 제20조의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연차별 집행계획
4. 대상정책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안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안전관련평가의 평가항목) 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정책이 위험요소, 안전관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안전권에 미치는 영향
2. 대상정책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약자에 미치는 영향
3. 대상정책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요소 저감을 위한 제도·조치의 병행 여부
4. 대상정책 도입 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복구체계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지원체계의 마련 여부 등

제21조(안전영향평가의 시기) 안전영향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은 해당 법령안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
2.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3.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업예산을 확정하기 전

제22조(중앙행정기관의 안전영향평가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은 대상정책에 대하여 안전영향평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요청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요청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도의 안전영향평가 방법 등) ① 시·도의 대상정책 소관 부서(이하 “요청부서”라 한다)의 장은 안전영향평가 신청서를 시·도 안전영향평가부서(이하 “평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요청부서의 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평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영향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군·구의 안전영향평가 방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군·구의 대상정책에 대하여 안전영향평가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영향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전문기관의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영향평가의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4항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안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안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안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절차 등 안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영향평가 결과의 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결과 및 개선·요구사항의 이행 상황을 법 제9조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등

제29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 ① 피해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대상 정보의 종류·내용 및 요청 사유, 제공 방법 등을 기재하여 문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제공의 예외) ①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이 대상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해당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된 경우

③ 그 밖에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1조(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안전사고의 범위 등)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로서 법 제18조제2항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사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안전사고

제32조(조치계획 등의 제출 및 점검)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방안은 국가등이 조사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계획과 이행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등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확인한다.

제33조(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조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등) 조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쇠약이나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5조(조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사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조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사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

우

6. 조사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발생하면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조사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36조(조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등) ①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호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조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⑥ 조사위원 및 조사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7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국가안전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국가안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예비조사) ① 조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실시 여부,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조사단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사실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조사 실시 여부 및 조사계획을 의결할 수 있다.

제40조(지원조직)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지원) ① 조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1.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2.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

3. 그 밖에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

②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 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조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수습과정
3. 원인분석
4. 조사결과
5. 정책개선 권고 및 재발방지대책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조사결과 등의 발표) 조사위원회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 사항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정보의 공개 제한) ① 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및 장래의 조사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
- ②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1조에 따른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조사위원회의 심의

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6조(추모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하 “추모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 생명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명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추모사업의 추진 및 추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공동체 회복 사업) ① 국가등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시행할 수 있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인종·종교·성별·연령·직업 등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및 지역사회 유대 강화
4. 건강·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주민조직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5.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담·조언
3. 공동체 회복 사업의 개발·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회복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생명안전위원회(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사무기구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43조의10, 제43조의11, 제73조의8 및 제88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종전 국민생명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 제9조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종전 국민생명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법 제9조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국민생명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는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의 소관사무 및 예산은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가 승계한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
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사무기
구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안전관련기준의 범위
1. 건축 시설 분야	다중이용업소, 국가유산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기술적 기준 및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이용 등에 관한 기준
2. 생활 및 여가 분야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 및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이용 등에 관한 기준
3.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대기환경·토양환경·수질환경·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과 시설, 발전시설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 및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이용 등에 관한 기준
4.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부대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 및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이용 등에 관한 기준
5. 산업 및 공사장 분야	각종 공사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부주의 등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공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이용 등에 관한 기준
6.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 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통신매체 및 관련 시설과 정보보호에 관련된 기술적 기준 및 그밖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이용 등에 관한 기준
7. 보건·식품 분야	의료·감염, 보건복지,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기술적 기준 및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이용 등에 관한 기준
8. 기타 분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분야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적 기준 및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이용 등에 관한 기준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4124